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7925(본소), 2014다779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7925(본소), 2014다77932(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21922(본소), 2014나8995(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소14016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2. 26.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21922(본소), 2014나8995(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